감 사 위 원 회

징 계 및 주 의 요 구

제 목 **OOOO심의회 운영 및 수당지급 부적정**

관 계 기 관 인개개발원

내 용

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」 제7조(경상적경비)에 따르면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(기준경비)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, 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”라고 되어 있고,

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6조(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) 제1항 “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”고 규정되어 있으며,

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 제4조(수당) 제1항에는 “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,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다.

또한,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(이하 ‘인재개발원’ 이라함)에서는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19조(○○○○○○○위원회)에 의거 「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학칙」 으로 ○○○○을 위한 「○○○○심의회」 를 구성·운영하고 있으며,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들에게 ○○수당 및 ○○수당을 지급하고 있다.

따라서, 인재개발원에서는 ‘○○○○심의회’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」 에 따라 예산을 편성·지출하여야 했고, 수당지급 규정, 인재개발원학칙 등을 준수하여야 했다.

그럼에도 인재개발원에서는 2014 ~ 2018.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28회의 '○○○○심의회'를 운영하면서 아래【표 1】과 같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【표1】 2014~2018. 4월 ○○○○심의회 운영 및 예산(수당) 집행현황

(단위 : 횟수, 원)

구분	OOOO심의회 개최횟수	OOOO심의회 의결 및 개최 방법		OOOO심의회 개최 계획서 작성여부		예산(수당) 집행 금액	업무 담당자	비 고
		대면	서면	작성	미 작성			
2014년	9	5	4	1	8	6,150,000	갑	지출 합계 14,400 천원
2015년	6	2	4	1	5	4,650,000	갑	
2016년	6	1	5	1	5	3,600,000	갑	
2017년	5	2	3	1	4	3,150,000	을	
2018.4월까지	2	1	1	1	1	1,500,000	병	
합 계	28	11	17	5	23	19,050,000		

① 세출예산 편성 규정 미준수

2014. 1. ~ 2018. 4. 감사대상 기간 중 집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'○○○○심의회' 운영계획에 따라 해마다 예산지출이 예상되는 위원회 ○○수당을 세출 예산에 편성[1] 하여 지출하여야 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【표 1】과 같이 2018. 4. 현재까지 19,050천원(**갑 14,400천 원, 을 3,150천 원, 병 1,500천 원**)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 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.

② 'OOOO심의회' 개최계획서 미작성 등 업무 소홀

인재개발원에서는 「'가'과-14934(2014.11.25.)호에 의거 개정된 '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학칙[2]'에 따라 ○○○○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○○○○심의회를 구성·운영(【참고 1】) 하고 있으나, 2014. 1.부터 ~ 2018. 4. 현재까지 아래의 【표 2】와 같이 총 26회의 '○○○○심의회'를 개최하면서 22회에 걸쳐 계획서, 개최일시, 심의안건 등에 대하여 위원장의 결재 없이 업무담당자[3]가 단독으로 외부위원들에게 심의자료와 사전검토 의견서를 전자우편으로

1) 2019년 세출예산 편성요구(예산액 7,650천원, OOOO심의회 수당 및 운영비)
2) 제7조(OO OO기준) ⑤ 인재개발원장은 OOOO을 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,

송부하고 제출받아 수합하는 등 ○○○○심의회가 언제 개최되었는지 심의 안건은 무엇인지 조차 알 수 없었으며,

【참고 1】 OOOO 심의 흐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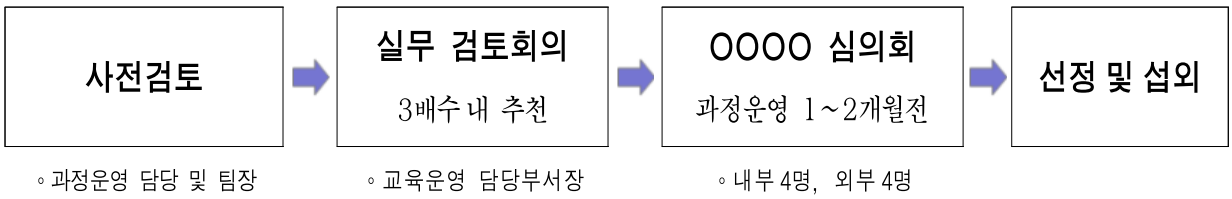

※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

또한, '○○○○심의회'는 대면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서면심의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음에도, 아래의 【표 2】와 같이 총 26회 '○○○○심의회' 중 16회에 걸쳐 서면심의 의결을 하고도 이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설명이 없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출강강사 선정의 투명성을 저해 하였다.

【표 2】 2014. 1. 15. ~ 2017. 12. 31. 기간 OOOO심의회 개최 현황

(단위 : 횟수)

구분	OOOO심의회 개최횟수	OOOO심의회 의결 및 개최 방법		OOOO심의회 개최 계획서 작성여부		업무담당자
		대면	서면	작성	미작성	
2014년	9	5	4	1	8	갑
2015년	6	2	4	1	5	갑
2016년	6	1	5	1	5	갑
소 계	21	8	13	3	18	-
2017년	5	2	3	1	4	을
소 계	5	2	3	1	4	-
합 계	26	10	16	4	22	-

③ 'OOOO심의회' 사전 검토수당 미지급

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의하면 '심사수당(사전검토의견서 제출에 따른 수당)'은 위원회 위원장(인재개발원장)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안건 ○○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「제9차 ○○○○심의회 개최결과 보고」('가' 과-14160 : 2014.11.20.)에 첨부된 사전검토의견서 3부(제출위원 : 정, 무, 기)에 대하여 아래의 【표 3】과 같이

3) 업무담당자 갑, 을(담당별 위반내역 표 2)

총 450천 원(3명×150천 원)을 2018. 4. 감사일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.

【표 3】 OOOO심의회 사전 검토수당 미지급 현황 (단위 : 원)

개최결과보고서 작 성 일	의결방식	사전검토의견서 제출 위원수	수당지급여부	업무담당
2014.11.20	서 면	3명	1인당 150,000원	○○○
합 계			450,000원	

④ 'OOOO심의회' 사전검토수당 증빙자료 미첨부 지급

2014. 1.15 ~ 2017. 1.15. 기간 중, 총 8회의 '○○○○심의회' 개최 결과에 따라 ○○ ○○수당 3,450천 원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서 및 수당지급 내부결재 공문 등 증빙자료(사전 검토의견서)가 아래 【표4】와 같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사전 검토수당을 지급하는 등, 수당지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【표 4】 OOOO심의회 ○○ ○○수당 증빙자료 미첨부 지급 현황

(단위 : 명, 원)

연번	OOOO심의회 개 최 일 시 (결과보고서)	의결방식 (대면·서면)	참 석 외 부 위원수	사전검토의견서 첨 부 내 역	사전검토수당 부당 지급금액 (1인당 15만원)	업 무 담 당	비 고
1	'14.02.11.(02.13)	대면	3명	4명 미첨부	600,000원	갑	사전검토 4명
2	'14.02.26.(02.28)	대면	4명	4명 미첨부	600,000원	갑	사전검토 4명
3	'14.03.26(04.01)	대면	2명	2명 미첨부	300,000원	갑	사전검토 4명
4	'14.07.09(07.10)	대면	3명	3명 미첨부	450,000원	갑	사전검토 3명
5	'14.10.01(10.06)	대면	2명	2명 미첨부	300,000원	갑	사전검토 2명
6	'15.02.12(02.13)	대면	3명	3명 미첨부	450,000원	갑	사전검토 4명
7	'15.09.11(09.14)	대면	4명	3명 미첨부	450,000원	갑	사전검토 4명
8	'16.02.03(02.22)	대면	2명	2명 미첨부	300,000원	갑	사전검토 3명
합 계					3,450,000원		

⑤ 'OOOO심의회' 외부위원 사전 검토수당 초과 지급

'가'과-640(2014. 1.23.)「○○○○ 심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」 방침에 의하면 2014년 ○○○○심의회 외부위원 ○○·○○수당 세부내역을 1인당 250천 원(2시간 초과시) 즉, ○○○○수당 100천 원, ○○수당 150천 원으로 책정하였음에도 지급

근거도 없이 아래【표5】와 같이 2014년 1년 간 지급된 ○○·○○수당을 1인당 300천 원으로 지급(27명분에 대하여 50천 원씩, 1,350천 원 초과지급)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, 관련 업무를 소홀하였다.

【표 5】 OOOO심의회 외부위원 사전검토 수당 초과 지급 현황

(단위 : 명, 원)

연 번	OOOO심의회 개 최 일 시 (결과보고서)	의 결 방 식 (대면·서면)	○○○○ 수당 지급금액 (1 인 당 15 만 원)	○○○○토 수당 초과 지 급 금 액 (1인당 5만원 초과)	업 무 담 당	비 고
1	'14. 2.11.(2.13)	대면	4명 600,000원	4명 200,000원	갑	사전검토수당 1 인 당 10만원 책정
2	'14. 2.26.(2.28)	대면	4명 600,000원	4명 200,000원	갑	
3	'14. 3.26(4. 1)	대면	4명 600,000원	4명 200,000원	갑	
4	(5.12)	서면	3명 450,000원	3명 150,000원	갑	
5	(6. 2)	서면	4명 600,000원	4명 200,000원	갑	
6	'14. 7. 9(7.10)	대면	3명 450,000원	3명 150,000원	갑	
7	(9. 1)	서면	3명 450,000원	3명 150,000원	갑	
8	'14.10. 1(10. 6)	대면	2명 300,000원	2명 100,000원	갑	
합 계			**27명 4,350,000원**	**27명 1,350,000원**		

【 조치할 사항 】

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은 '○○○○심의회' 운영과 관련 예산편성지침, 학칙 등 관계 규정에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(징계, 주의요구)